#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99

발의연월일: 2021. 4. 12.

발 의 자: 박대수 · 김용판 · 김선교

박성민 • 이주환 • 지성호

김희곤 • 허은아 • 권영세

안병길 · 이종배 · 곽상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 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인증내용 중 배기량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한편,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더라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와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이와 같이 배출가스 양의 증가여부에 따라 중요사항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 대상 여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보고 또한 자동차제작자의 의무사항임 에도 이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변경보고의 대상 등 변경보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제작 인증과 관련한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등).

#### 법률 제 호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사항"을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요사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③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자동차제작자가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2제3항제4호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제6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48조제3항"을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1. 제4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	2
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u>사항</u> 을 변경하려면 변	사항(이하 이 조에서
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u> "중요사항"이라 한다)</u>
<u>&lt;신 설&gt;</u>	③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
	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
	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u>것으로 본다.</u>
<u>&lt;신 설&gt;</u>	④ 자동차제작자가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③</u> (생 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u> 제1항부터 <u>제3항</u> 까지의 규	<u>⑥</u> <u>제5항</u>

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인증의 면제·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저

- ① · ② (생 략)
- ③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3. (생략)
- 4. <u>제48조제4항</u>에 따른 인증시 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 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생 략)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u>
1. ~ 3. (현행과 같음)
4. <u>제48조제6항</u>
④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u>.</u>
<ol> <li>제48조제3항 또는 제4항에</li> </ol>
따른 변경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의 표시를 하 지 아니한 자 1의3. ~ 2. (생 략) ② ~ ⑥ (생 략)

1의2. <u>제48조제5항</u>
1의3. ~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